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3. 5. 21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3년 5월 17일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3년 5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3. 5. 21)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곽소득)

가. 제안이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1991. 5. 31 제4370호)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공무원이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앞두고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응 훈련 기간으로써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이번에 별정직에도 적용하고자 한 것은 법의 형평과 평등원칙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